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3
----------	---------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송순효, 강선영, 신낙형, 김동협
김성한, 이종숙, 박성호,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강서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민간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차.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제8조의4
- 나. 협조부서: 의약과
-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되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8조의4